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허용 등〉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7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 후보자가 될 경우 경선운동 허용	4
2.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 운동 허용	8
3.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 경선후보자가 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허용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희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18.
3. 회 부 일 : 2026.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만 가능할 뿐 다른 경선후보자처럼 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경선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경선통보물 발송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선후보자간 경선운동 방법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은 물론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선거현장에서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은 물론 법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법 제8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물론, 법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면 경선운동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법에 가능여부를 명문화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아울러 다른 경선후보자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내경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 경선운동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7조의6제3항).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 후보자가 될 경우 경선운동 허용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경선후보자가 될 경우 해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② (생략) <u><신설></u>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인 경우 해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u>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정당 내부적 경선, 즉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나,¹⁾²⁾ 정당의 규모와

1) 현재 2022. 6. 30. 2021헌가24, 공보 309, 837

2) 한편,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이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과는 별개로, 판례는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경선운동에도 적용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공직선거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당내경선운동에 대해서도 그 주체(법 제57조의6)와 방법(법 제57조의3)을 규율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57조의6제1항은 “제60조제1항3)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⁴⁾

3)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가 되는 것 자체는 별도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서 “제 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함께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문의 문언상 원칙적으로 경선운동이 제한됨.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다른 경선후보자는 자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에 반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을 위한 경선운동까지 제한한다면 경선후보자 간 경쟁조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2년 현직 도지사가 그 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선거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에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경선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공직선거에서는 그 직을 유지한 채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한 바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도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유지되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법문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경선후보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경선운동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인 후보자와 다른 경선후보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2.5.21.

2.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 허용

개정안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당내경선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법 제59조제2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법 제59조제3호) 및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 또는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법 제59조제4호) 등을 활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u><신설></u> 1. ~ 3. (생략) ② 정당이 <u>제1항제2호</u> 또는 <u>제3호</u> 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후보자를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 ----- ----- ----- -----. 1. <u>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방법</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 <u>제1항제3호</u> ----- <u>제4호</u> <u>의</u> ----- ----- -----

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의 경선훈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 ----- -----.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로 참여하는 경우 ①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의 설치·게시, ②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③ 경선훈보물 발송, ④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등 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경선운동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⁶⁾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방식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법 제59조제2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같은 조 제3호), 전화 또는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같은 조 제4호) 등 또한 경선운동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 즉,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가능

6)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 ② 삭제
-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한 경선후보자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고, 경선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경선훈보물 발송·합동연설회 등의 경선운동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인터넷·전자우편·전화 또는 말 등의 방법은 이용할 수 없음.

이에 개정안은 법 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을 당내경선에서도 명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경선후보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문자메시지·인터넷·전자우편·전화 또는 말 등을 통한 경선운동을 허용하여 경선후보자 간 경선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다른 경선후보자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직에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자메시지·인터넷·전자우편·전화 등을 활용

하여 광범위하게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지위와 경선후보자로서의 지위가 혼재되어 선거구민에게 공적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인식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력·연락망 등 행정자원이 경선운동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경선운동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과 함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지위 및 행정자원이 경선운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른 경선후보자 간 경선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57조의3 제1항에 법 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과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전념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3.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 경선후보자가 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허용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 현행법상 제한되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한되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公務員(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任·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所屬職員 또는 選舉區民에게 教育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業績을 弘報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選舉權者의 支持度を 調査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 7.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7. (현행과 같음)

② -----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 제 2. 政黨의 政綱・정책과 主義・主張을 選舉區民을 대상으로 弘報・宣傳하는 행위. 다만, <u>당해</u>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創黨大會・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를 제외하고는 政黨이 개최하는 時局講演會, 政見・政策發表會, 黨員研修・團合大會 등 일체의 政治行事に 참석하거나 選舉對策機構, 選舉事務所, 選舉連絡所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5. (생략) ③ ④ 삭 제 ⑤ ~ ⑦ (생략)	----- -----. 2.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u> ----- -----. 3. ----- ----- ----- -----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u> -- - <u>되거나</u> ----- ----- ----- -----. 4. 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되는데,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이 제한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 등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등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이 금지됨.

이와 같은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권한의 오남용이나 편파적인 직무집행 등으로 인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⁷⁾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러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운동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임.

이 경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경선후보자에 비하여 경선운동의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경선후보자 간 경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선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8노25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단 나) 부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의 기획 또는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까지 허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공적 지위와 경선후보자로서의 지위가 혼재되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정·시정 등 직무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와 달리 곧바로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상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서 동시에 경선운동을 수행하게 됨. 이 경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인지도·조직·행정정보 등에 따른 영향력이 경선운동에 결합되어 오히려 다른 경선후보자와의 경쟁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선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경선후보자와의 경쟁조건을 균형 있게 하고 경선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도정·시정 등 직무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이 경선운동에 미치는 영향 및 다른 경선후보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 범위와 필요한 통제장치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경우 경선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